

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■ 추진 일정

-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2002.1.26 법률 제6640호)으로 하위 규정인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
- 건설교통부 내부(안)을 확정하여 관계부처에 협의
-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(2002년 4월 25일) 및 의견 수렴(2002년 5월 20일)
- 최종 건설교통부(안)을 확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
- 경제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
- 공포 시행:
 - 시행령 : 대통령령 제17,740호로 2002년 9월 18일 시행
 - 시행규칙 : 건설교통부령 제332호로 2002년 9월 18일 시행

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

1. 건설업 등록기준의 신고 의무(제12조의 2 및 부칙)

□ 개정

- 건설업 등록기준을 매 3년마다 신고
-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매 1년마다 신고

※ 이 영 시행일(2002년 9월 18일) 당시 건설업

을 등록한 지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□ 개정사유

- 부실건설업체 퇴출 유도

2.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의무(제12조의 3)

□ 개정

-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의 변경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
-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상: 상호, 대표자, 영업소재지, 법인(주민)등록번호,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
- 건설업 양도, 합병, 상속으로 인한 신고사항은 제외

3. 하도급계약의 허위 통보시 처벌조항 강화(별표6)

□ 현행

-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할 경우 “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”

□ 개정

-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할



법령개정

경우 “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”으로
강화

□ 개정사유

- 이중계약 등 하도급분야 부조리 방지

4.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근거 마련(제34조 제3항)

□ 현행

-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, 하도급계약금 액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를 고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.

※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(2000년 6월 1일)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공문 형태이다.

□ 개정

-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5.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(제26조)

□ 개정

- 원도급자가 도급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 (공사개요, 도급계약내 용, 계약조건, 현장기술인 배치현황, 하수급인 현황, 시공참여자 현황 등)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(www.kiscon.net)을 통 하여 발주자에게 통보

○ 통보대상공사 및 시기

- 3억원이상 공사: 2003년 1월 1일 이후
- 1억원이상 공사: 2004년 1월 1일 이후

6.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조건 확대(별표 2)

□ 개정

-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을

다음과 같이 개정

-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
-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
-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
 - (가)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·가스용 접·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·건축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
 - (나)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 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한 자

□ 개정사유

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사항 반영

7.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조정(제35조 및 별표 5)

□ 개정

- 기능장: 모든 공사(300억원 이상 포함)에 배치 가능
- 산업기사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 한자: 2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배치 가능
-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(현장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자): 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배치 가능
-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시점을 공사착공시점으로 명시

※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은 2002년 9월 18일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시행



8.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(제51조제2항)

□ 개정

-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: 6인(현행은 4인)

9.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역 축소(별표 1)

□ 개정

-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정
-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 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 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개량·보수· 보강하는 공사.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 사를 제외한다.

1.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 선공사

2.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의 경우 증설,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 수·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

3.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·보수·보강 공사

□ 개정사유

- 현행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역이 확대되어 기계설비공사의 개·보수공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리모델링 공사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어, 설비업계 및 일반건설업계와의 업역 분쟁이 발생(우리협회 건의사항임)됨에 따라 시 설물유지관리업의 업역 축소

10.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경과기준 설정(제79조의 2)

□ 개정

-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에 해당 하는 자가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 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50일 이내 보완

11. 위탁기관 지정권한의 변경(제87조)

□ 개정

- 시공능력의 평가·공시, 건설공사의 실적등 신 고의 처리,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의 정부권 한의 위탁기관 지정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(현행은 시·도지사)

12. 과태료 내용 신설

□ 개정

-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및 허위통보 : 100만원
-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사항을 기한내 미신 고 : 50만원
- 건설공사 표지게시 또는 표지판의 미설치 : 50 만원

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

1. 시공능력평가시 시공실적 증명서류 개선 및 허위 시공실적 처벌 조항 강화(제22조 및 별표 1·2)

□ 개정

- 허위시공실적 제출자 :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5% 삭감



- 민간공사(하도급공사 포함) 실적증명서류: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·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·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

2.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(제23조)

□ 개정

- 전문건설업자간의 하도급실적을 시공능력평가 시 인정 명문화
- 시공능력평가시 공제조합 출자금액 제외

3. 시공능력 공시방법 개선(제24조)

□ 현행

- 일간신문에 공시

□ 개정

-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

4.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(제28조)

□ 현행
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제외

□ 개정

-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제외(하도급법령과 동일)

5.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

□ 개정

• 공시내용

- 상호, 대표자, 주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
- 법인등록번호

- 건설사업관리실적
- 건설공사시공실적, 엔지니어링사업실적, 감리용역실적, 건축설계실적
- 건설업등록, 감리전문회사등록,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 및 신고현황
- 인력보유현황
- 재무상태,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내용
- 공시시기 등
- 매년 2월 15일 : 사업관리실적현황표 제출
- 매년 4월 15일 : 재무재표 자료 제출
- 매년 8월 31일 : 건교부지정 정보통신망에 공시

6. 건설현장에 건설공사표지 설치(제32조)

□ 개정

- 건설공사현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의 현황을 게시
- 공사명, 공사내용, 발주자, 설계자, 시공자, 감리자, 현장배치기술자, 공사금액, 착공연월일, 준공예정연월일
- 건설공사 완공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보전(단 표지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예외)
- 공사명, 공사기간,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, 발주자의 성명(기관인 경우 기관의 명칭), 설계자의 성명, 감리자의 성명,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, 현장기술자 성명